

준법경영위원회 규정

제정 2019년 7월 31일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공정거래법 등의 준수를 위하여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회사 올리브영부문의 준법경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

- ① “공정거래법”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,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,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의미한다.
- ② “준법경영(컴플라이언스)”이란 “공정거래법” 등 공정거래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법규 위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③ “준법경영위원회”란 대표이사 및 해당 사업부서의 준법경영 준수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의무를 지는 조직장으로 구성된 최고이사결정기구를 의미한다.
- ④ “자율준수관리자”란 회사 임직원 중 준법경영을 수립하고, 그 집행과정 전반을 감독하기 위하여 준법경영위원회에 의하여 임명된 자를 의미한다.
- ⑤ “컴플라이언스 파트”란 준법경영 업무를 주관하여 실행하는 부서를 의미한다.
- ⑥ “실무협의체”란 준법경영 이슈와 관련한 사업부서/지원부서 내 회사 사업 및 준법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의미한다.

제3조 (구성)

- ① 준법경영위원회는 위원과 간사로 구성되며, 올리브영부문 전조직장 및 유관부서장으로 다음과 같이 위원을 구성한다.
 1. 위원장: 대표이사
 2. 위원: 영업본부장, MD사업본부장, 디지털사업본부장, 브랜드사업본부장, SCM담당,
글로벌사업부장, 경영지원담당, 전략지원담당, 인사담당, 법무팀장, 경영진단팀장
 3. 간사: 컴플라이언스 파트장
 4.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

- ② 준법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법경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조직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기로 한다.
- ③ 준법경영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컴플라이언스 파트장이 담당한다.

제4조 (역할 및 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준법경영 기본방침 설정 및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·의결
2. 준법경영을 위한 임직원 업무지침의 제·개정
3.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
4. 준법경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업무 범위 설정
5. 준법경영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 및 감독
6. 준법경영 위반사항의 접수, 처리, 포상 및 징계 결정 (단, 징계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 제56조 내지 제60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위임할 수 있다)
7. 기타 위원회가 준법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 (회의)

- ① 준법경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.
- ② 정기회의는 年 1회,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 회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 3일전(영업일 기준)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④ 위원장은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⑤ 위원장이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- ⑥ 특정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동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.

제6조 (의결 등)

-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대해 서면 (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의 서면 등을 포함한다.)으

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서면 결의한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

제7조 (의사록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.

1. 개최일시, 장소, 출석위원 명단
2. 회의 안건 및 경과 요지

제8조 (의결효력)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결의일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제9조 (위원임기)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 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폐는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